



규정

기획예산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TWP-B212
제정일자	1997. 04. 01.
개정일자	2023. 02. 28.
개정번호	6
페이지	1/4

작성부서	기획예산처	제정일자	1997. 04. 01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분	작성	검토					승인
직책	담당	기획예산처장	교무학생처장	산학입학처장		사무처장	총장
서명							
일자							




규정

기획예산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TWP-B212
제정일자	1997. 04. 01.
개정일자	2023. 02. 28.
개정번호	6
페이지	2/4

개정이력		
개정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10. 04. 12.	- 6차 개정
2	2016. 02. 18.	- 규정명칭변경(기획위원회=>기획·평가위원회) - 위원회 기능구체화 - 만족도 조사(CSI) 환류기능 - 평가기능 통합
3	2016. 12. 23.	- CQI규정 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 삭제(만족도 조사(CSI) 환류기능)
4	2017. 02. 28.	- 기획위원회 규정명 개정 - 위원회 심의 기능 제정 - 위원회 구성 사항 개정 - 회의 운영 개정
5	2018. 02. 19.	- 201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면 개정 기획홍보처 → 기획처, 입학관리센터 → 입학처 학생처/학생취업처 → 학생취업처 전공주임교수 → 학과장 변경
6	2023. 02. 28.	- 기획예산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정리 - 위원회 구성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지정 변경

	규정	문서번호	TWP-B212	
		제정일자	1997. 04. 01.	
	기획예산위원회 규정	개정일자	2023. 02. 28.	
		개정번호	6	페이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직제규정 제7조에 의하여 “기획예산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<개정 2017.02.28. 2023.02.28.>

제2조(위원회 기능) [전문삭제 2017.02.28.]

제2조의1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, 평가 및 개선
 1. 대학의 사명, 비전, 교육목표 등 교육가치 체계
 2. 대학발전을 위한 전략 및 계획
 3. 예산 등 대학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
- ② 대학 자체평가 및 품질개선 결과의 개선 및 환류 관련한 사항
- ③ 기타 대학발전과 관련되는 주요사항
- ④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전문신설 2017.02.28.]<개정 2023.02.28.>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2.28.>

② <삭제 2023.02.28>

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학생처장, 기획예산처장, 산학입학처장, 사무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10.4.12., 2017.02.28., 2018.02.19. 2023.02.28.>

④ <삭제 2017.02.28.>

⑤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2.28.>

⑥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2.28.>


제4조(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기획예산처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.<개정 2023.02.28.>

③ 간사는 위원회 업무의 서무를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의사록을 기록, 보관한다.

제5조(회의운영) ①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되 위원 3분의2 이상의 제청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.

② 의사진행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B212	
		제정일자	1997. 04. 01.	
	기획예산위원회 규정	개정일자	2023. 02. 28.	
		개정번호	6	페이지

<개정 2017.02.28.>

제6조(대학발전기획팀) [전문삭제 2017.02.28.]

제7조(세부사항)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